



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제484호 2015. 9. 30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 진안군 고시 제2015-89호 (진안 군계획시설(충혼공원) 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)1

회 말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진 안 군 (편집 행정지원과(063)430-2838

진안 군계획시설(충혼공원) 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전라북도고시 제1985-135호(1985.09.23.)로 진안 군계획시설(근린공원)으로 결정된 충혼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진안군 건설교통과(☎063-430-2437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진 안 군 수

2015년 10월 1일



1. 실효일자 : 2015. 10. 1

2. 실효사유 :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 및 부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(공원)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

3. 실효된 진안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 : 공원) 내용

가. 군계획시설(충혼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2	충혼공원	근린공원	진안읍 군상리 90-92 일원	25,500	(감) 25,500	-	전북고시 제135호 (1985.09.23)	

나. 군계획시설(충혼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	비고
2	충혼공원	충혼공원 폐지 : 면적 25,500m ²	충혼공원은 1985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, 공원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8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따른 공원 폐지	

4. 진안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: “실음생략”